

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3003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21년 12월 21일
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과 「지방공무원법」 일부개정(‘22.1.13.시행)으로 의장이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에 대한 전속적인 인사권한을 가지게 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「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를 폐지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과 같은 법 시행령, 「지방공무원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.

다. 기 타 : 해당 없음.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.